
配合飼料製造用動物藥品 및 飼料添加劑 사용규제

農水産部에서는 축산물에 잔류되는 항생물질이 국민 보건에 유해한 점을 감안하여 배합사료에 동물약품 및 사료첨가제에 대한 사용지침을 발표. 7월 1일부터 실시하도록 하였다. 특히 산란계 배합사료에는 항생물질제제, 설파제, 구충제 등의 약품이 일체 첨가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 우리 양축가들의 우려를 모으고 있다.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이희구씨와 이재진씨의 원고를 통해 알아보기로 한다. — 편집자주 —

배합 配合飼料製造用 動物藥品 및 飼料添加劑에 대해 양축가가 유의할 점

이 희 구

(한국동물약품협회 전무이사)

'7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사료첨가물질 사용 지침은 항생물질제제, 구충제, 설파제 등의 사용 방법과 사용 한도량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는 1969년 영

국의 Swann 보고서, 1972년의 미국의 식품 및 의약품 관리국(FDA)에 의한 항생물질 사용제한 조치에 관한 보고서, 1976년 일본의 사료 및 사료 첨가물의 성분 규

격등에 관한 성령등이 발표됨으로써 우리나라의 항균물질 사용 실정을 감안하여 농수산부에서 발표한 사용지침이며 우리나라에서도 선진국과 같이 국민 보건에 미치는 영향을 최대한 방지하고자 함이 그 목적이다. 즉 축산 식품을 통하여 인체에 영향을 주는 잔류성, 독성, 발암성등의 우려가 있는 약품을 과다하게 사용하는 것을 막아 안전한 축산 식품을 생산하자는 것이다.

사료 첨가물은

1. 가금, 가축의 성장촉진
2. 건강의 유지 및 증진
3. 사료 효율의 향상
4. 축산물의 상품 가치의 향상
5. 사료의 품질보전

등이 그 사용 목적이니만큼 지침서에 의한 규정 한도량과 사료 첨가물의 용도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데 양축가의 고충이 있으리라 생각하며, 사료 첨가물의 사용제한에 따라 질병 예방에 대한 보다 세심한 주의와 배려가 요구된다

이에 따라 양축가는 환경위생등 방역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점을 점검해야 할 것이다

1. 계사 환경의 정비 강화
2. 자위 방역의 강화
3. 방역 프로그램의 재검토
4. 가축 보건소 및 가축위생 연구소와 긴밀협조 강화
5. 계병에 대한 인식의 향상
6. 개업 수의사의 계병에 대한 예방 치료의 경험유무, 기술우열등의 확인
7. 약품관계 판매원에 대한 대응상식의 습득
8. 계병에 관한 정보과약 강화
9. 민간방역 기구를 설립, 공동방역, 정보교환, 강습회 개최

첨가물의 병용의 금지

이 규정은 항균성 첨가물을 다섯으로 구

분하여 동일란에 있는 항균성 첨가물을 같은 배합사료내에 사용할 수 없게 되어있다.

별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 1란은 항콕시디움제, 제 2란은 장내 기생충 구제제, 제 3, 4란은 항생물질, 합성 항균제, 제 5란은 설파제등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제 4란의 6종류는 주로 그람음성균에 듣는 것으로 테트라 사이클린계의 3종(염산 옥시 테트라사이클린, 염산 클로르테트라 사이클린, 옥시 테트라 사이클린 제 4급 암모늄)과 카바독스, 오라퀸독스, 황산콜리스티닌데 이중 황산 콜리스티닌을 제외한 5종은 제 3란에도 수재되어 있다.

다시 말해서 황산 콜리스티닌만은 제 3란의 약품과 병용하여 쓸수 있다는 말이 되는 셈이다.

식용으로 도살전 7일간에 사용하는 배합 사료에는 첨가하지 않는 이유는

1. 출하 7일전에 투약을 중지하여도 계방역 면이나 배합사료 효율 개선에 큰 도움을 주지 않으며

2. 잔류성 항생 물질도 7일간의 휴약 기간만 두면 축산 식품의 잔류성 문제가 해소되기 때문이다

양축가는 위와 같은 점을 잘 이해하여 항생물질 사용에 주의를 기울인다면 축산 식품으로 인한 잔류성, 독성, 발암성등의 문제는 해소되어 소비자에게 안전한 축산 물을 공급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배합사료 회사에서도 양축가를 위하여 약품의 첨가 허용 여부를 표시하여야 하며 육계 후기 사료는 I, II로 분리하여 육계후기 II사료에 관한 한 무첨가 배합 사료를 권장하며 양축가 또한 출하 육계에는 반드시 육계후기 II사료를 사용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지침에 의해서 산란계 배합 사료는 무첨가 배합 사료라는 것을 명심하여 이에 대한 사양관리에 특별히 유의 하여야 할 것이다.